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-491호

구서4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67-1번지 일원 구서4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17일
부 산 광 역 시 장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구 역 명	위 치	구역면적 (㎡)	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	비고
구서4 재건축사업 정비구역	금정구 구서동 167-1번지 일원	11,254.6	2027. 12. 29.까지	-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에 의한 구역의 명칭 변경 및 대상지의 현 현황을 고려한 대표지번 변경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해당기한 도래전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의 100분의 30 이상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3.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051-888-4244), 금정구 건축과 (051-519-4614)에 관계서류 비치